

#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1년 6월 28일  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5. 24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1. 6. 21
- 다. 상정일자 : 2001. 6. 21 제86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특  
(2001. 6. 21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환경복지과장 신만희)

### 가. 제안이유

-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여성의 권익증진, 여성단체 지원, 여성관련시설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조성에 대한 규정(안 제2조)
- 심의위원회 구성 " (안 제5조)
- 위원장의 직무등에 " (안 제7조)
- 회의에대한 규정 " (안 제8조)
- 수당등에 대한 규정 " (안 제9조)
- 결산 및 보고에 " (안 제11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가.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조례로서 평창군 여성의 권익증진, 여성단체지원, 여성관련 시설등에 필요

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창군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.

나.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다. 따라서 본 조례는 기금의 재원을 평창군의 출연금, 기금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,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투명화시켰으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, 직무회의, 결산 및 의회보고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하였음.

라. 기타 법령형식·절차·자구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○ 기금의 목표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	○ 현재 5억으로 계획하고 있음
○ 우리군에는 여성단체협의회, 새마을부녀회등 여러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를 지원할 것인지?	○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
○ 기금설치에 대하여 여성단체로부터 요구가 있었는지?	○ 요구는 없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였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## 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

붙 임 :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부